

강원대학교병원 의료용 가스 납품 시방서



강원의료의 질과 품격을 높이는 병원

2024. 04.

시설과

목 차

1. 개 요

- 가. 건 명
- 나. 납품위치
- 다. 납품기간
- 라. 계약기간
- 마. 납품내용

2. 단가계약 특수조건

- 가. 계약조건
- 나. 자격조건
- 다. 현장납품
- 라. 안전점검
- 마. 안전검사
- 바. 공급비의 지급
- 사. 지체상금
- 아.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
- 자. 손해배상
- 차. 기타

1. 개 요

본 시방서는 강원대학교병원(이하“병원”)과 의료용 가스 납품자(이하“계약자”) 간에 체결한 의료용 가스의 원활한 납품과 이에 따른 검수를 적정히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가. 건 명 : 강원대학교병원 의료용 가스 납품

나. 납품위치 :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56 강원대학교병원

- 1) 본관 B1F 의료가스실
- 2) 어린이병원 B3F 기계실 의료가스실
- 3) 병동 및 진료부서
- 4) 기타 발주부서에서 요청한 장소

다. 납품기간 : 요구일로부터 24시간 이내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.

- 1) 응급환자 등의 진료를 위하여 특별히 시간을 정하여 납품을 요구할 때는 지정된 해당장소 및 시간 내에 납품하여야 한다.

라. 계약기간 :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

마. 납품내용

- 1) 의료용 가스 납품
- 2) 압력조절기, 연결부속, 안전밸브 등 가스 부속품 교체
- 3) 가스의 누설, 전도방지 등 안전점검 수행
- 4) 그 외 “병원” 가스안전관리자와 협의한 기타사항

2. 단가계약 특수조건

가. 계약조건

- 1) 의료가스 납품 계약기간은 **2024년 7월1일부터 2025년 6월 30일**로 하며, 계약 만료일 전에 “병원”이 연장계약을 요청할 때 본 계약기간은 “병원” 과 협의 후 연장될 수 있으며, 계약 연장 시 단가 및 기타사항 등 모든 조건은 종전과 같이 계약할 수 있다.
- 2) “계약자”는 “병원”과 계약이 체결되면 가스안전관리자와 협의하여 의료가스 납품에 필요한 장치(안전장치, 공급장치, 압력조절기 등)를 설치하고 무상으로 “병원”에게 대여한다.
- 3) “계약자”는 각 부서에 의료가스 납품 시 “병원” 가스안전관리자가 별도 요청할 경우 해당 부서의 의료가스 관련 부속품(압력조절기, 연결부속, 안전장치 등)의 체결에 협조하도록 한다.
- 4) 의료가스의 성질상 필요한 용기 또는 부속품의 납품 및 체결에 대한 운임, 기타 납품 절차를 완료하기까지의 제비용은 “계약자”의 부담으로 하며, 의료 가스 납품 중 용기 및 부속품의 분실, 파손 등은 “계약자”가 책임을 진다.

나. 자격조건

- 1) "계약자"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용 가스 제조 및 판매 허가를 받고 약사법 제31조에 의거 품목별 의약품제조업(의료용 고압가스) 허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한다.
- 2)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시한 의료용 고압가스 제조품질관리(GMP) 적합 판정서를 받은 업체이어야 한다.
- 3) "계약자"는 의료용 가스 품목별 제조업 허가증, 품목별 의약품제조업 허가증, 제조품질관리(GMP) 적합 판정서를 "병원"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4) 의료용 액화산소 전용 탱크로리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한다.

다. 현장 납품

- 1) "계약자"는 계약 명세서에 기재된 의료가스 중 "병원"의 요구가 있을 때는 24시간 이내에 납품함을 원칙으로 하되, 응급환자 등의 진료를 위하여 특별히 시간을 정하여 납품을 요구할 때는 지정된 시간 및 해당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.
- 2) "계약자"는 해당 장소에 의료가스 및 부속품을 납품, 체결 후 납품부서 확인자에게서 거래명세서에 서명받아야 한다.
- 3) "병원"의 필요에 따라 추정 소요량과 관계없이 총납품 지시 수량은 증감될 수 있다.
- 4) 병원 특수부서(중환자실, 분만진통실) 출입 시에는 "병원" 지침에 따라 가스 안전관리자와 출입 인원을 사전 협의하고, 사전 출입 증명서에 기록된 직원만 출입할 수 있으며 출입 전 명부에 기록 후 출입하여야 한다.
- 5) "병원" 의료가스 수요량 증가 및 특수사항 발생에 따른 납품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때 "계약자"는 가스안전관리자와 협의하여 원활한 의료가스 납품이 이루어지도록 한다.

라. 안전점검

- 1) "계약자"는 납품 및 용기 체결 후 가스의 누설점검, 전도 방지 등 안전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.
- 2) "계약자"는 의료가스시설(연결부속, 압력조절기, 안전밸브)에 이상 발생 시 "병원"의 가스안전관리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안전조치 후 부속품을 교체하여야 한다.
- 3) "계약자"는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한 경우 그 의료가스 및 가스부속품의 사용, 보관,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설명서 등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
마. 안전검사

- 1) "계약자"는 "병원" 가스안전관리자가 안전과 관련된 점검을 요청할 시 "계약자"는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관련자료(측정자료, 사진자료, 가스 분석 성적서, 용기 검사 성적서 등)를 "병원"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2) "계약자"는 "병원"에서 사용 중인 의료가스 용기의 기한 만료 시 그 사실을 "병원"에 통지하고 대품을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.
- 3) "계약자"는 제1항의 검사에 있어서 불합격품이 있을 시에는 즉시 대품을 제공하고 해당 용기를 검사받아야 한다.

바. 공급비의 지급

- 1) "계약자"는 매월 말일까지 납품한 기준으로 "병원"이 사용하는 거래명세서 서식으로 당월 납품한 의료용 가스공급 거래명세서를 작성(서명한 거래명세서 및 엑셀파일) 하여 제출한다.
- 2) "병원"은 "계약자"가 제출한 첨부서류 등 가스공급비 지급 관련 사항을 검토 및 확인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"계약자"에게 대금을 정산지급하여야 한다.

사. 지체상금

- 1) "계약자"는 납품 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 마다 계약금액 또는 미 납품 대금에 1,000분의 0.7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.

아.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

- 1) "병원"은 "계약자"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 - 가) 계약서상의 납품 기한(또는 연장된 납품 기한) 내에 "계약자"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의료가스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할 때
 - 나) "계약자"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납품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
 - 다) "계약자"가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
- 2) "계약자"는 계약상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는 즉시 "병원"에 통지하여야 한다.
- 3) 제1항에 따라 계약 해지 시 계약보증금은 전액 "병원"에 귀속한다.

자. 손해배상

- 1) "계약자"는 본 계약체결에 따라 납품된 의료가스 및 부속품 관련 법령 위반, 제품 불량 또는 "계약자"의 과실,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"병원"에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액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.
- 2) "계약자"는 본 계약체결에 따라 공급된 의료가스 및 부속품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피해 및 계약 내용의 위반에 대하여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.

차. 기타

- 1) 본 시방서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"병원"의 요구에 따르며 이견이 있는 경우 "고압가스 안전관리법", "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"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.
- 2) 본 시방서에 있어서 불명확한 사항 또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"병원"의 의견과 해석을 받아야 하며 어구에 해석 차이가 있을 경우는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.
- 3) "계약자"는 관계 직원의 출입, 풍기문란, 도난사고에 철저한 감독을 해야 하며 화재, 인명피해,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, 의료가스 납품 중에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"계약자"가 책임진다.
- 4) "계약자"는 "병원"의 감염병 대응 지침을 준수하며 "병원"의 요청 시 "병원"에서 정한 기일에 검사받은 감염 음성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다.
※ "병원 감염병 대응 지침에 따른 출입 관리 준수를 철저히 따라야 한다.
- 5) 위 기타사항을 미준수하여 출입 및 작업 진행 시 "병원"은 즉시 퇴출 명령을 할 수 있으며, 위 상황으로 발생한 각종 사고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, "계약자"는 형사 및 민사비용 등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.

(별지 제3호 서식)

[부당계약특수조건 사업부서 체크리스트]

사업명	24/25년 의료용 가스 공급 단가계약				
부서명	시설과	작성자	김재화	작성일자	2024.04.18.

연번	과업지시서, 계약특수조건 등 점검사항	해당유무(Y/N)
1	과업지시서, 계약특수조건 등 계약서류에 갑을(甲乙)용어 대신 발주기관을 ‘계약처’ 또는 ‘발주처’로 계약업체를 ‘계약상대자’로 표기했는가?	Y
2	과업 내용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, 협의절차 또는 분쟁 처리절차 없이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고 한 내용은 없는가?	Y
3	과업 수행 중 계약 내용 변경사유 발생 시(물량증감, 물가상승 등) 계약 금액 조정 협의를 제한하는 내용은 없는가?	Y
4	과업지시서, 특수조건 등 계약서 부속 서류 상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과업 지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가?	Y
5	계약기간 이후에 발주부서가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적인 과업 지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가?	Y
6	포괄적·불명확한 사유에 의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한 내용은 없는가?	Y
7	과업 내용에 ‘그 밖에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’ 등 포괄적인 과업지시를 한 내용은 없는가?	Y
8	계약진행 중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책임소재 구분 없이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내용은 없는가?	Y
9	계약 체결시 산출내역서 상 명시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한 내용은 없는가?	Y
10	(협상계약)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결과(평가점수, 평가위원 명단)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한 내용은 없는가?	Y